

청주지방법원 2021. 12. 23 선고 2020가단3894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1. 12. 2.

판 결 선 고 2021. 12. 23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금 31,321,298원 및 위 금원 중 30,466,271원에 대하여 2020. 12. 31.부터 2021. 12. 23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. 5. 31.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.
3.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. 8. 20. 접수 제29893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 2. 피고 A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피고 B :
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- 판사 박현수

